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설치 · 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20. 5. 26.
- 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6.16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문화예술과장 남종운】

### 가. 제안이유

조례의 별표 중 ‘초과사용료 징수’ 및 ‘준비대관료 할인 적용’, ‘대관료 할증 및 감면’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미 해석에 대한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시설 초과사용료 징수 규정 일부 수정  
(안 별표 - 1. 시설사용료 가. 일반기준 (4)항)
  - 1회의 사용시간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가산적용에 대한 규정 정비
- 2) 공연장 및 전시실의 기본대관료 할인 기준 수정  
(안 별표 - 1. 시설사용료 가. 일반기준 (10)항 (나)목)
  - 1일 2회 이상의 공연에 대하여 2회 차부터의 할인기준 정비
- 3) 리허설, 준비, 철수 대관 할인 기준 항목 이동

(안 별표 - 1. 시설사용료 가. 일반기준 (7)항 및 (8항))

- (7항) 및 (8항)을 (10항) 공연장 및 전시실의 기본대관료 할인기준 (다목) 및 (라목)으로 이동

4) 문화·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중 ‘유아체능단’ 삭제

(안 별표 - 2. 문화·체육프로그램 사용료 나. 개별기준 (1) 문화강좌·생활체육 프로그램)

- 유아체능단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의 설치기준 미달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, 아트센터 시설구조적 한계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워 문화강좌·생활체육프로그램에서 삭제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본 안건은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의미해석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이며, 구체적으로는 마포아트센터 초과 사용료 징수 규정 및 준비대관 사용료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먼저, 안 제12조(사용료의 징수 등)에서는 사용료를 대관료, 강습료 및 이용료 등으로 구분한 것을 ‘사용료’로 통일시킴으로써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정비하고 있음.
- 동 조례의 별표 - 1 시설사용료 가. 일반기준 4항을 개정하여 1회의 사용시간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가산 적용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,
- 별표 - ‘1 시설사용료’ 가. 일반기준 7항 및 8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10항의 ‘공연장 및 전시실의 기본대관료 감면 기준 (라목) 및 (마목)으로 이동하고 있는 바, 이는 내용상 관련 있는 규정을 같은 항으로 이동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- 별표 - ‘2 문화·체육 프로그램 사용료’ 나. 개별기준 (1)에 명시된 유아체능단 사용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, 이는 현재 마포아트센터 내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따른 것임.
- 위와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, 마포아트센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금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